

에너지시스템공학부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 규정

제정 2008. 2. 20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7조 및 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규정에 의거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종합시험) 종합시험은 원자핵공학전공과 에너지자원공학전공별로 다음 각호의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.

① 원자핵공학전공

가. 석사 학위과정 종합시험 문제로서 교수 1인당 대학원 강의과목별 1문항을 원칙으로 각 2문항씩 출제한다. 단 동일분야의 문항이 충분할 경우, 일부 교수의 출제를 면제할 수 있으며, 동일분야의 문항이 불충분할 경우, 해당분야 교수별 문항수를 증가할 수 있다. 응시자는 모두 5문항을 풀어야 한다.

나. 박사 학위과정 종합시험 문제로서 교수 1인당 대학원 강의과목별 1문항을 원칙으로 각 2문항씩 출제한다. 단 동일분야의 문항이 충분할 경우, 일부 교수의 출제를 면제할 수 있으며, 동일분야의 문항이 불충분할 경우, 해당분야 교수별 문항수를 증가할 수 있다. 응시자는 모두 5문항을 풀어야 한다. 박사과정 학생은 박사과정수료 후 1년 이내 응시를 요건으로 한다.

② 에너지자원공학전공

가. 출제 문항의 ‘전공’ 및 ‘배점’ 을 반드시 명시한다.

나. 3문제 이상을 출제한다.

제3조 이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과 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원자핵공학과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로부터 소속을 변경한 학생 및 2007년도 이후 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